

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 7 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2024년 제 1 차 종류주주총회(보통주) 의사록

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"회사")의 종류주주총회(보통주)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다.

일 시: 2024년 08월 05일 (수) 오후 2시
장 소: 본점 회의실(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5층)
출석주식수 : 총 발행주식수 800,001주 중 800,001주
출석주주수 : 총 4명 중 4명

의장 대표이사 이준구는 본 회의의 소집 절차가 정관에서 정한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출석한 주주가 정족수에 충족하였으므로,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하였다.

(결의 사항)

□ 제1호 의안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의장은 정관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관을 변경할 것을 설명하고 출석 주주들의 심의를 구한 즉, 참석 주주 전원이 이의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 1 호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.

변경전	변경후
<p>제 9 조 (주식의 종류와 보통주식의 내용)</p> <p>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고, 그 종류는 보통주식, 제1종 종 종류주식, 제2종 종류주식으로 한다.</p> <p>② 회사가 발행할 보통주식, 제1종 종류주식, 제2종 종류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다.</p> <p>③ 회사가 발행할 주권은 1주권, 5주권, 10주권, 50주권, 100주권, 500주권, 1,000주권, 10,000주권 8종으로 한다. 단, 주주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권종의 주권을 발행 할 수 있다.</p>	<p>제 9 조 (주식의 종류와 보통주식의 내용)</p> <p>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고, 그 종류는 보통주식, 제1종 종류주식, 제2종 종류주식, 제3종 종류주식으로 한다.</p> <p>② 회사가 발행할 보통주식, 제1종 종류주식, 제2종 종류주식, 제3종 종류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다.</p> <p>③ 회사가 발행할 주권은 1주권, 5주권, 10주권, 50주권, 100주권, 500주권, 1,000주권, 10,000주권 8종으로 한다.</p>

<p>제 9 조의 2 (종류주식의 내용)</p> <p>① 회사는 제1종 종류주식을 [오백만]([5,000,000])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.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누적적, 비참가적이며 의결권이 있다.</p> <p>② 회사는 제2종 종류주식을 [오백만]([5,000,000])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.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누적적, 비참가적이며 의결권이 있다.</p> <p>③ 회사는 이익배당시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최우선으로,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7.5%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 2. 제1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,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4.5%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 3. 제2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,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. 다만, 아래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본 항에 	<p>제 9 조의 2 (종류주식의 내용)</p> <p>① 회사는 제1종 종류주식을 [오백만]([5,000,000])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.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누적적, 비참가적이며 의결권이 있다.</p> <p>② 회사는 제2종 종류주식을 [오백만]([5,000,000])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.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누적적, 비참가적이며 의결권이 있다.</p> <p>③ 회사는 제3종 종류주식을 [오백만]([5,000,000])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.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누적적, 비참가적이며 의결권이 있다.</p> <p>④ 회사는 이익배당시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최우선으로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4.0%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 2. 제1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,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7.5%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 3. 제2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
---	--

<p>따라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</p> <p>가. 회사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중 경기도 오산시 은계동 7-18, 7-19 토지(이하 통틀어 "추가 부지") 및 지상 신축 예정인 근린생활시설(이하 "추가 건물", 추가 부지와 추가 건물을 통틀어 "추가 부동산")에 관하여,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가 추가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회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 등 금원(이하 "추가 이익금")을 수령하는 경우:</p> <p>1) 제2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(이 경우, 해당 금액이 추가 이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의미한다)의 15.0%를 각각 제1종 종류주식 및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하고, 나머지 이익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</p> <p>2) 본 목 1)과 관련하여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추가이익금을 초과하는 경우, 해당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. 명확히 하면, 해당 초과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목 2)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</p> <p>1.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, 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배당가능한 이익(이하 "매각원인 배당가능 이익금")이 발생한 사업연</p>	<p>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,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4.5%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</p> <p>4. 제3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,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. 다만, 아래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본 항에 따라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</p> <p>가. 회사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중 경기도 오산시 은계동 7-18, 7-19 토지(이하 통틀어 "추가 부지") 및 지상 신축 예정인 근린생활시설(이하 "추가 건물", 추가 부지와 추가 건물을 통틀어 "추가 부동산")에 관하여,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가 추가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회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 등 금원(이하 "추가이익금")을 수령하는 경우:</p> <p>1) 제3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(이 경우, 해당 금액이 추가이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의미한다)의 15.0%를 각각 제1종 종류주식, 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하고, 나머지 이익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</p> <p>2) 본 목 1)과 관련하여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추가이익금을 초과하는 경</p>
--	--

<p>도에 대하여는 아래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한다. 이 경우 “매각원인 배당가능 이익금”이라 함은 (A) 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수령한 매매대금(해당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른 조기상환 및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각종 부대비용, 금융비용 및 관련 보수 등 일체의 비용을 차감한다)에서 (B) 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때 지급한 매매대금 및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각종 부대비용, 금융비용 및 관련 보수 등 일체의 비용{해당 비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,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각종 비용을 안분하여 계산한다}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(A-B)을 의미하며, 음수(陰數)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.</p> <p>가. 제2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 중 매각원인 배당가능 이익금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배당한다.</p> <p>(1) 각 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이를 때까지 각 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한다.</p> <p>(2) 위 (1)의 배당 후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, 그 중 각 15.0%를 각각 제1종 종류주식 및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하고, 나머지 70%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</p> <p>가. 제2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</p>	<p>우, 해당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. 명확히 하면, 해당 초과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목 2)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</p> <p>5.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, 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배당가능한 이익(이하 “매각원인 배당가능 이익금”)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아래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한다. 이 경우 “매각원인 배당가능 이익금”이라 함은 (A) 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수령한 매매대금(해당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른 조기상환 및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각종 부대비용, 금융비용 및 관련 보수 등 일체의 비용을 차감한다)에서 (B) 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때 지급한 매매대금 및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각종 부대비용, 금융비용 및 관련 보수 등 일체의 비용{해당 비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,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각종 비용을 안분하여 계산한다}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(A-B)을 의미하며, 음수(陰數)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.</p> <p>가. 제3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 중 매각원인 배당가능 이익금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배당한다.</p> <p>(1) 각 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이를 때까지 각 주식의 발행가</p>
---	--

	<p>배당가능이익이 매각원인 배당가능 이익금을 초과하는 경우, 해당 초과금액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.</p>	<p>액 상당액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한다.</p>
(4)	<p>어느 사업연도에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전항 제1호 및/또는 제2호에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해당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액에 추가하여 배당한다.</p>	<p>(2) 위 (1)의 배당 후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, 그 중 각 15.0%를 각각 제1종 종류주식, 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하고, 나머지 70%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</p>
(5)	<p>회사 청산시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을 분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최우선으로,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 제1호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누적된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, 그 미배당금액을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 2. 제1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 제2호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누적된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, 그 미배당금액을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 3. 제2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(제3항 제4호 가목 (1)에 따라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 	<p>나. 제3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매각원인 배당가능 이익금을 초과하는 경우, 해당 초과금액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.</p>
(6)		<p>(5) 어느 사업연도에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전항 제1호 및/또는 제2호에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해당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액에 추가하여 배당한다.</p> <p>(6) 회사 청산시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을 분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최우선으로,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4항 제1호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누적된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, 그 미배당금액을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 2. 제1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4항 제2호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금

	<p>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)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</p>		<p>액으로서 누적된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, 그 미배당금액을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</p>
4.	<p>제3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(제3항 제4호 가목 (1)에 따라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)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</p>	3.	<p>제2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4항 제3호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누적된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, 그 미배당금액을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</p>
5.	<p>제4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보통주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(제3항 제4호 가목 (1)에 따라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)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</p>	4.	<p>제3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(제4항 제4호 가목 (1)에 따라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)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</p>
6.	<p>제3항 제4호 가목 (2)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금액 중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, 미배당금액을 제3항 제4호 가목 (2)에서 정한 배당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배한다.</p>	5.	<p>제4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(제4항 제4호 가목 (1)에 따라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)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</p>
7.	<p>제6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</p>	6.	<p>제5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(제4항 제4호 가목 (1)에 따라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)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</p>
(6)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제 1 종 종류주식, 제 2 종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			

	<p>7. 제6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보통주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(제4항 제4호 가목 (1)에 따라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)에 이를 때 까지의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</p> <p>8. 제4항 제4호 가목 (2)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금액 중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, 미배당금액을 제4항 제4호 가목 (2)에서 정한 배당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배한다.</p> <p>9. 제8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 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</p> <p>⑦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제 1 종 종류주식, 제 2 종 종류주식, 제 3 종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</p>
제 10 조 (주식 양도의 제한)	- 삭제 -
회사의 모든 주식의 양도(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양도 포함)는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, 이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.	제 12 조 (신주의 동등배당)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, 무상증자,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(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)한 동종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. (여기서 동종주식이란 당사의 정관 제 9 조 및 제 9 조의 2에서 구분한 주식이 아닌, 한국거래소 표준코드상 동종 주식을 의미한다.)

제 2 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의 경우 해당 신주의 배당금 계산에 있어서의 산정 기간은 주금 납입일(해당 사업연도에 신주 발행이 수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납입된 금액별로 기간을 계산함)의 익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.

의장은 이상으로 금일 의안이 심의 종료되었음을 고하고 폐회를 선언하다.

(폐회시간 : 오후 2시 30분)

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다.

2024년 8월 5일

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의장 겸 대 표 이 사 이 준 구

